

##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입법예고

「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7월 30일

옥 천 군 수

1. 조례명 :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2. 개정이유
  -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
3. 주요내용
  -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(안 제3조)
4. 개정근거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
5. 의견제출
  - 「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재무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전화 : 043)730-3235, FAX : (043)731-2486

-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

## 6. 붙임

-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의견서 서식 1부.

옥천군조례 제 호

##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3조의 “2020년 12월 31일까지로”를 “2025년 12월 31일까지로”로 한다.  
제16조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0년 12월 31일까지</u> 한다.	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5년 12월 31일까지</u> <u>지로</u> ----.
<u>제16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	<u>&lt;삭 제&gt;</u>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##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조 례 명 :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전 화 번 호 :

조 례 안	의 견